

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5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처분대상

업체명 (대표자)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영업소 소재지	처분내용 (처분일)	처분근거
㈜동남건설 산업개발	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 (경남통영2009-06-01)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6-9, 202호(마전동)	시정명령 (2023.11.15.)	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(건설공사대장 미통보)

2. 시정내용 : 건설공사대장을 2023. 11. 30.(목)까지 발주자에게 통보
3. 공고장소 :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4. 공고기간 : 2023. 11. 15. ~ 11. 30.
5. 기타사항
- 가.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나.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(☎560-4484)로 문의바랍니다.